

問題 提示

# 建築公害에 關하여

金 熙春

(서울大學校 工科大學 教授)



## [I] 公害란 무엇인가? (PUBLIC NUISANCE)

1. 社會에 害로운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서 그 것이 生기면서 利益을 보는 사람과 害를 받는 사람이 있다.

社會에 害를 끼치는 영향이라 함은 心身 또는 生活環境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動植物, 物의 財產等에 끼치는 영향도 포함된다.

2. 그 發生源이 不特定이거나, 特定한 경우에도 因果關係의 立證이 곤란하기 때문에 責任의 所在가 不明確하게 된다.

3. 加害의 양상이 繼續的으로 있어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社會的으로 受忍될 수 있는 것인가 판정이 곤란하다.

4. 私法上에 구제조치에 의한 解決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公法上의 対策이 必要하다.

## 公害의 種類

1. 大氣 汚染
2. 騒音
3. 水質 汚染
4. 其他(日照, 人工光線에 依한 妨害, 振動, 地盤沈下, 惡臭, 電波, 障碍等)

## [II] 對 策

世界의 人口는 現在 35億인데 여기 이르기 까지는 数万年이 걸렸다고 하는데, 앞으로 2, 30年内에 그倍인 70億이 될 것이라고 보면, 山이던 땅이던 全 陸地가 人類에게 隆땅 배당이 되었어도 한 사람당 占有面積은 불과 얼마 안 될 것이다.

또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들은 文明의 機器들은 점점 더 큰 公害의 發生源이 된다.

先進各國들은 벌써 여러해 전부터 여기에 對한 對策을 강구중에 있으며 法制化된 나라들도 많다.

現在까지 建築은 雨露, 風雪을 막는 것으로만 生覺하였지만 앞으로 이 公害를 막는 計劃이 있어야 하겠다.

따라서 建築士 여러분은 建築士 한 사람의 利益만 生覺할 것이 아니고, 社會全体를 위한 利益을 生覺해야 된다.

또한 公害問題는 하나 하나의 建築으로서 解決 할 수 없는 特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地域의으로 더 나아가서 都市全体로서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.

그런 意味에서 專用住居地域, 專用工業 地域의 指定等이 時急히 이루어져 이러한 公害를 未然에 防止하고 既存 地域에 對한 對策도 아울러 될 것이라고 본다.

이에 對한 当局의 과감한 施策이 時急히 要望된다.